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08
----------	-------

발의연월일 : 2023. 12. 13.

발 의 자 : 송옥주 · 설 훈 · 이원욱
한정애 · 우원식 · 홍영표
김영주 · 박홍근 · 허숙정
양경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열거하면서, 특정 행위의 학대를 받아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 지역의 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현장점검 결과, 동물 번식장에서 많은 동물들이 지속적인 영양결핍과 관리부재로 피부병, 전신쇠약 등의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어, 동물이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일 이상의 격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등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노력 규정을 의무화하고 5일 이상의 격리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양호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34조제3항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을 “동물의 운동·휴식”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나 물 공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또는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제34조제1항제3호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을 “5일 이상의 기간을”로 한다.

제97조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0조제4항제4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u>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u> 하여야 한다.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 ----- <u>동물의 운동·휴식</u>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③ (생략)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동물에게 적합한 사료나 물 공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또는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 ----- ----- ----- -----

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 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2. (생략)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
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
단되는 동물

② (생략)

③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7조(벌칙) ① ~ ④ (생략)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3. -----

----- 제4항 제2호 .
제4호-----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5일 이상의

기간을 _____

_____.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2. ~ 12. (생략) ⑥ (생략)	⑤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0조제4항제4호를 위반한 소유자등</u> 2. ~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